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김혜지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3410호

다. 제출일자 : 2026. 2. 9.

라. 회부일자 : 2026. 2. 12.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3485호

다. 제출일자 : 2026. 2. 9.

라. 회부일자 : 2026. 2. 12.

II. 제안사유

1.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안

-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에서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함 (2025.12)에 따라 조례의 약물에 대한 규정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또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포상·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운영

· 관리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시민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약물’을 변경된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에서의 ‘약물’로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보도통행 금지 등 안전운행기준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포

창, 홍보,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행 기록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IV. 참고사항

1.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2. 20. ~ 2.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1) 교통운영과-2784(2026.2.23.)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도로교통법」에서 약물운전 금지 조항과 관련된 약물의 정의가 새로운 조항으로 정비됨에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 조례상 약물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우리 시에 별도 예산상, 행정상 부담이 없는 내용이므로 별도이견없이 원안 동의하고자 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2. 20. ~ 2.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²⁾

○ 제출의견 : 수정가결

- (제5조제4항) 안전운행 준수 의무 등 발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2) 교통운영과-2784(2026.2.23.)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동 조례 제5조제3항의 준법통행 의무와 중복되므로 별도 조항 신설 없이 제3항의 자전거 이용자를 차량 운전자로 개선하여 개정 취지 반영

- (제12조제3항)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예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규정이 강행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기존 운수사업체 서비스평가에 교통안전 분야가 이미 반영되어 시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15조제4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운행 기록 관리 및 운행실태 점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 관리) 조항에서 차량안전 관리 실태 조사, 점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아닌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5.12.)에 따라 신설된 약물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마약, 환각물질 등의 영향 하에 자동차 및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최근 불법 약물이나 처방약을 복용한 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대두³⁾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청⁴⁾에 따르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5년도에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약물 운전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3년과

3)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약물운전...“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1.08.)

종각역 추돌 택시 기사 ‘모르핀’ 검출... 사람 잡는 ‘약물 운전’ (서울신문, 2026.01.05.)

현대해상 “약물운전 교통사고 5년새 2건→23건 증가” (연합뉴스, 2025.6.26.)

4)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 보도자료, 2026.1.14.)'

비교할 때 2025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4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마약 운전 및 약물운전 운전면허 취소건수 및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운전면허 취소건수	80건	128건	163건	237건	+ 74건(45.4%)	
구분	마약운전교통사고(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약물운전 교통사고(마약류관리법 외)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3년	5	0	13	19	0	32
2024년	18	1	44	52	1	86
2025년 (잠정)	31	2	49	44	2	68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5)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6)에 따라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5)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시행일: 2026. 4. 2.]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 특히, 지난 12월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 개정으로 약물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그 동안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번호: 21246, 공포일자: '25.12.30.)

- 의안번호 14185, 2025.12.2. 제429회 국회(정기회)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

개정내용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

- 동 개정조례안⁷⁾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약물운전의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에게 약물 복용 후 주의력 저하나 판단력 감소 등의 부작용에 따른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시민의 책무)

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또는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2. 과로, 질병 또는 약물(「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약물 운전의 범위, 위험성 및 처벌강화 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들 또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2.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시민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의 안전운행 기준 준수 의무 관련 (안 제5조제4항)

- 코로나19 기간 중 배달 문화 확대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⁸⁾ 서비스

발전으로 퍼스트·라스트 마일⁹⁾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신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인해 통행자의 이동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었음

- 그러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보도 통행 등으로 인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¹⁰⁾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확대되고 있음

※ 서울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승용차, 승합차 등은 제외)

가해운전자 차종별	사고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륜차	사고[건]	4,016	4,035	3,431	2,943	2,709
	사망[명]	41	39	44	28	33
	부상[명]	5,165	5,166	4,344	3,801	3,482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고[건]	678	498	488	415	488
	사망[명]	9	7	4	2	6
	부상[명]	842	608	599	521	629
자전거	사고[건]	1,802	1,779	1,674	1,531	1,670
	사망[명]	14	13	8	6	11
	부상[명]	2,018	1,969	1,861	1,698	1,845
개인형이동장치 (PM)	사고[건]	387	445	406	500	448
	사망[명]	1	1	5	3	1
	부상[명]	420	489	449	547	502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8) 모빌리티(Mobility): 일반적으로 이동의 용이성, 즉 이동성 그 자체를 의미하며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이동성 증진을 통칭 ('24.6.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매뉴얼, 한국교통안전공단)

9) First Mile & Last Mile (퍼스트 마일 & 라스트 마일)

- (퍼스트 마일) 현위치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 (ラスト 마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

10) [르포] “인도주행 범칙금 4만원입니다” 경찰, 이륜차 PM 집중 단속 (2025.11.25. 파이낸셜 뉴스)
[팩트체크] 불쑥 나타나는 '킵라니'...인도 주행은 위법 (2025.10.31. 연합뉴스)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¹¹⁾, 원동기장치자전거¹²⁾, 개인형 이동장치¹³⁾ 및 자전거¹⁴⁾를 “차”로 분류¹⁵⁾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로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도 주행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1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1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1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하 생략)

※ 각 이동 수단별 비교(보도주행 관련 처벌 사항 포함)

구 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
종 류	125cc 초과 배기량 (또는 11kW 초과 전기 동력) 중형·대형 오토바이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외륜보드 등	전동킥보드, 스토틀방식 전기자전거	PAS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면 허	18세 이상 2종 소형면허 보유자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면허불필요
도로이용	차도통행, <u>보도통행금지</u>	차도통행, <u>보도통행금지</u>	자전거도로 통행원칙(없을시 차도 통행), <u>보도 통행금지</u>	
보도 주행시 처벌조항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통행구분 위반시 제재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			

- 이에 동 조례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 보도 통행 금지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시민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2조제3항)

- 안 제12조제3항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 영자에 대해 표창·홍보 등 행정적·예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 도록 하는 것임

- 「교통안전법」 제35조의2(16)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17) 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18)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운수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 동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예산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시민들이 여객·화물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6) 「교통안전법」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7)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케도운송법」에 따른 케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18)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준

- 대상 및 기준: 최근 3년간 교통안전평가지수 1미만, 동종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상위 5%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운수회사 중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운수회사
- 절차: 운수업체 추천 → 실태조사 및 평가 → 우수사업자 지정
- 2024년 업종별 지정 현황: 15개 업체(시내외 4, 마을 2, 전세 5, 택시 1, 화물 3)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운행 기록관리 및 운행실태 점검 지원 관련(안 제15조제4항)

- 안 제15조제4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운행 기록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¹⁹⁾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인 어린이 대상 시설에서 영유아 등의 통학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된 자동차로 같은 법 제51조~제53조의5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의 의무 사항,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²⁰⁾에서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여부 등을 기록한 안전운행기록

19)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라.~차. 생략)

20) 「도로교통법」 제53조(정의)(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 작성·보관·제출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육사업 안내 등 관련 지침에 차량 안전관리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관계 부처 합동 통학버스 점검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26. 2.예정)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는 서울시 관내 544교 1,660대가 운영 중²²⁾으로 최근 5년간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²³⁾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2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9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① 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현황

(2025.9. 기준, 단위: 대, 교(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계
유치원	70 (34)	104 (44)	85 (48)	88 (45)	52 (25)	126 (44)	124 (51)	53 (28)	72 (26)	83 (37)	929 (411)
초등학교	61 (10)	90 (13)	17(7)	78 (10)	49 (13)	8(4)	21(6)	16(7)	12(4)	84(8)	492 (91)
특수학교	-	11(3)	12(2)	16(3)	10(4)	12(4)	6(2)	17(4)	11(4)	15(5)	114 (32)
외국인학교	-	42(3)	-	13(1)	24(2)	-	-	33(2)	-	-	124 (9)
거점형 늘봄센터	-	-	-	-	1(1)	-	-	-	-	-	1(1)
계	131 (44)	247 (63)	114 (57)	195 (59)	136 (45)	146 (52)	151 (59)	138 (42)	76 (36)	182 (50)	1,660 (544)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23) 서울 가해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있다는 점을 비취볼 때 동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운행 기록관리 및 운행실태점검에 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관리는 각 시설장, 서울시 보육 관련 부서, 교육청, 자치구 등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해당 내용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가해운전자 차종별	사고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어린이통학버스 (비사업용)	사고[건]	60	74	121	121	103
	사망[명]	0	2	2	1	2
	부상[명]	84	87	151	162	130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